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 www.hansungnews.com |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제587호

지면안내

03 사회 자유롭지 못한 프리랜서

04 기획 내 손으로 뽑는 총장, 대학 자치의 첫걸음

06 기획 위태롭고도 위대한 챗GPT

08 광고 제17회 사진공모전 현상공모

노동조합, 총장선출제도 개선 요구

한성학원 "총장선출 관련 소위원회 구성 예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한성대학교지부(이하 노동조합)가 직원의 총장선출투표권 확대를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동조합은 2월 17일부터 상상관·미래관 등 본교 곳곳에 '총장선출투표권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재했다. 또한 창의관·우촌관 등 건물 앞에는 '한성대학교 총장선출과 관련한 직원의 권리는 평등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에 학교법인 한성학원(이하 한성학원)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법인 이사회 산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과정을 밟겠다고 전했다.

대자보 내용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구체적으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민주적 총장선출제도 즉각 이행',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의 직원 위원을 3명으로 확대', '총장 최종후보자 선정을 위한 투표권을 직원 1인당 1표 부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 지부장을 맡고 있는 윤구(현장실습지원센터) 차장은 "제10대 총장선출 당시인 2019년부터 직원 투표권의 확대를 요구했고 차기 총장선출 때에 논의하자는 한성학원의 답변을 받았었다"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전체 노동조합원의 요구 서명을 첨부해 투표권 확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혔고, 제11대 총장선출이 올해 예정돼 있기에 반드시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본교의 총장선출 방식은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 시행세칙(이하 정관 시행세칙)」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정관 시행세칙 제10조에 규정된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가 먼저 설립된다. 선정위는 교수 대표 3인, 직원 대표와 학생 대표 각 1인, 이사회 대표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대표자는 각 직역에서 자율적으로 선출된다.

여기서 노동조합은 선정위에 속한 직원위원의 정수가 교수나 이사회 위원의 정수에 비해 적다는 사실을 문제로 지적하고, 직원 위원의 수를 3인으로 늘릴 것을 요구한다. 윤 차장은 "학원의 3주체는 교수·직원·학생이고,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해서는 학생과 직원의 선정위 위원 수를 늘려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교수협의회나 총학생회 측과도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이후 선정위는 3인 이상 7인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선발하고,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추천 사유 등을 교수·직원에게 알린다. 그 다음 교수·직원 전체의 투표를 통해 '최종후보자' 3인이 결정되고,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 제43조 2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최종후보자 중 1인을 총장으로 선임한다.

노동조합은 상술한 최종후보자 선정을 위한 투표에서 직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촉구한다. 교수의 투표권이 1인 1표인데 반해, 직원은 1인 1/3표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차장은 "대학의 대표자이자 행정 수반인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별로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이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현행 총장선출제도가 노동조합과 본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위배되기에, 민주적 총장선출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6조에는 '대학은 총장을 선출함에 있어 학내 구성원이 고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선출제도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차장은 "민주적 총장선출제도는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노동조합은 대학 행정의 수반인 총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즉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성학원은 현행 총장선출제도가 「단체협약」에 어긋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장배(법인사무국) 사무국장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직원 1인 1/3표의 투표권이라면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이 창의관 앞에 게재한 현수막

한성학원은 총장선출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사회 산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전 사무국장은 "제11대 총장선출이 빠르면 10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4월 21일에 열릴 '학교법인 한성학원 2023학년도 제1차 이사회'에 관련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노동조합에 전달했다"며 "직원 외 여러 학내 구성원의 총장선출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실현되려면 정관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한데, 이는 전적으로 이사회의 직권이다. 정관 시행세칙 제29조에서 당규의 개정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락 여부는 이사회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사무국장은 "정관 시행세칙 개정은 이사회의 권한일 뿐 아니라, 한쪽 구성원의 권한이 증대되면 총장선출을 둘러싼 다른 구성원의 반발이 따를 수 있기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성학원은 소위원회에서 학생의 의견도 수렴하고, 학생에게 총장후보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사항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회(IT융합 4) 총학생회장은 "학생의 총장선출투표권 논의도 이뤄지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온 만큼 한성학원과 노동조합의 타협이 우선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종적으로 교수, 직원, 학생 모두 총장선출과 관련한 각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합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협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1항에 의해,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

정상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2023학년도 상반기 학생자치기구 예산안 확정

▲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2023학년도 상반기 1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지난 23일 열렸다. 이번 총회는 상반기의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소속 학생회 예산 인준'이 안건이었다. 이 자리에는 중운위 소속 학생대표 10명 및 대의원 13명이 참석했으며, 모든 예산안은 재적 대의원 중 과반의 찬성을 받아 총 39,396,650원이 인준됐다.

총학생회 '이음'의 상반기 예산안으로는 총 28,798,700원이 승인됐다. 세부 항목에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 사용 품목 ▲대동제 ▲예비군 버스 대절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총대의원회 '청아'는 총 3,800,000원을 예산으로 인준받았다. 세부적으로 ▲재선거 ▲대의원 총회 ▲대의원 간담회 ▲우수 상임위원 선정 ▲우수 대의원 선정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등이 있다.

학생복지위원회 '채움'의 예산은 총 3,532,630원이다. 세부 내용은 ▲대여물품 ▲간식 ▲무인반납함 ▲주차권 ▲모니터링단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으로 이뤄졌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학생회 '구름'은 예산으로 총 899,260원을 책정받았다. 상반기 예산안 항목에는 ▲만우절 행사 ▲짝선배 & 짝후배 ▲상주물품정비 ▲프린트 대여 ▲자보홍보 활동 ▲사업예비비 ▲일상예비비 등이 있다.

디자인대학 학생회 'MOTIVE'는 2023학년도 상반기 예산으로 총 931,850원을 인준받았다. 예산안 내 품목에는 ▲물품 대여 ▲프린트 지원 ▲현대미술대회 ▲만우절 ▲어른이날 ▲사업 예비비 ▲일상 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IT공과대학 학생회 '늘찬'은 상반기 예산으로 총 1,434,210원을 승인받았다. 이는 ▲만우절 행사 ▲짝 선배 짝 후배 ▲e스포츠 대회 ▲대여사업 ▲일상운영비 ▲사업예비비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예산안이다.

한편, 이날 ▲동아리연합회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플러스대학의 2023학년도 상반기 예산안 인준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단위*들은 오는 4월 진행될 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추후 예산안 인준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회를 진행한 곽동민(사회과학 4) 총대의장은 "이번 대의원총회가 첫 회의다 보니 질의응답 시간에 대의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지 못한 듯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도 괜찮으니,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단위 : 총학생회 등의 중앙운영위원회와 단과대학, 트랙 학생회 등 선거가 진행되는 학생자치기구

장현진 기자 glenntravel1081@gmail.com

대학생활의 '힘찬 출발'

새학기를 맞이해 다양한 학내 행사가 개최됐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를 시작으로 '2023학년도 입학식(이하 입학식)'과 '2023학년도 1학기 동아리 박람회(이하 동아리 박람회)'가 차례로 열렸다.

4년 만에 열린 새터는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실시됐다. 본 행사에는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창의융합대학 등이 참여했다. 첫날의 주요 행사는 ▲개회식 및 안전교육 ▲학생회 및 교내 기구 소개 ▲동아리 공연 등이었으며, 이튿날은 ▲단과대학별 행사 ▲폐막 행사 ▲10cm 콘서트 & 자유시간 등이 진행됐다. 새터에 참여한 김민상(AI응용 1) 학생은 "새터를 통해 많은 학우와 인연을 맺었다"며 "본교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개강인 3월 2일에는 오후 2시부터 입학식이 낙산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개식사를 시작으로 학사보고, 신입학 허가 선언 및 신입생 선서, 장학증서 수여, 총장 환영사 등이 이어졌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삼학송 장학 ▲상상력인재장학 ▲낙산장학 ▲다이내믹 한성장학 수혜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삼학송 장학생으로 입학식에 참석한 박다인(인문 1) 학생은 "고등학교 3년간의 노력을 보상받은 기분이라 기쁘다"며 "고등학교 시절에는 입시 공부에 치중한 나머지 진로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다. 대학에서는 진로에 관해 탐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7일과 8일에는 동아리 박람회가 잔디광장과 우촌관 앞에서 열렸다. 행사는 이틀 모두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됐으며, 6개 분과의 35개 정동아리가 참가했다. 본 행사는 '동아리별 부스'와 '동아리 투어'로 구성됐다. 동아리 박람회는 휴학생을 포함한 본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다.

동아리연합회 '동화'는 동아리 박람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품과 비교과 포인트 혜택 등을 마련했다. 학생은 동아리 부스에 참여한 횟수만큼 'GOLDEN CARD'를 받았다. GOLDEN CARD 3장을 모아 동아리연합회 안내 부스에 방문한 선착순 36명에게는 'LEXON 블루투스 스피커', '상상부기 슬리퍼' 등의 상품이 증정됐다. 또한 3개 이상의 부스에 참여한 재학생과 동아리 부스 운영에 참여한 모든 동아리 부원에게는 비교과 포인트가 10pt씩 지급됐다. 학생 1인당 지급 가능한 비교과 포인트는 최대 20pt였다. 휴학생의 경우, 행사 참여는 가능했지만 비교과 포인트는 제공되지 않았다.

동아리별 부스는 ▲공연예술분과 ▲종교분과 ▲학술분과 ▲체육분과 ▲평면예술분과 ▲취미봉사분과 등 분과별로 지정된 위치에 자리했다. 각 동아리는 부스에서 동아리 홍보를 위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미니게임을 주관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김재민(컴공 2) 학생은 "동아리 박람회를 통해 여러 동아리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알게 돼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아리 투어는 본교 학우가 관심 있는 동아리방을 방문할 수 있는 행사다. 각 동아리는 동아리 투어 행사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했으며, 동아리 투어 상주 인원을 동아리방에 배치했다. 각 동아리방 상주 인원은 동아리방에 방문하는 학우들에게 동아리 활동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장현진 기자 glenntravel1081@gmail.com

1 사진 : 장현진 기자

2 사진 : 장현진 기자

3 사진 : 정상혁 기자

4 사진 : 박희진 기자

5 사진 : 김기현 기자

1 학생이 '한 얼' 부스에서 발차기 미니게임을 즐기고 있다.
2 'brillante' 부스에서 악기를 소개받으며 체험하고 있는 학생이다.
3 입학식에 참석한 신입학 장학생과 교내 인사가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4 1일차 저녁 동아리 공연 시간, 댄스 동아리 'NOD'가 춤을 추고 있다.
5 2일차 저녁, 학생들이 가수 '10cm'의 공연에 열광 중이다.

가수 '10cm'가 관중들에게 떼창을 유도하고 있다. ▶
사진 : 정상혁 기자

자유롭지 못한 프리랜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
피해 입어도 구제기관 마땅치 않아
법안 마련과 인식 개선 함께 가야

기업이 정규직보다 임시직 형태의 고용을 늘려 프로젝트나 업무를 처리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프리랜서를 포함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가 증가 중이다. 지난 2022년 장혜영(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00만 명가량 존재하던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근로자는 2020년 700만 명을 넘으며 가파르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프리랜서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현재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혹은 학술적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어떠한 조직에 고용되지 않고, 프로젝트·기간별 계약을 맺어 기술이나 능력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독립 주체라는 사회적 공감대만이 형성된 상황이다. 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돼 근로를 제공함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일을 수행한다는 의미다.

프리랜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독자적인 업무 수행'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근로자와 달리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도급계약, 용역계약으로 불리기도 하는 프리랜서 계약은 대체로 '일의 완성' 혹은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기에 『민법』상 '도급'에 해당한다. 결과만을 약정(約定)했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일하든 상관없으며, 일의 진척 상황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휴일·휴가, 육아휴직 등이 대표적인 권리다. 특히 '4대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험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프리랜서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인 근로자가 아니기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때문에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금액을 홀로 전액 부담하게 된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가입자로 규정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다. 최홍기(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현행 4대보험 체계는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한 보험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오늘날 많은 구조적 문제점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촉(解囑)증명서'의 발급도 프리랜서에게 골칫거리다. 해촉증명서란 계약이 종료됐음을 알리는 문서다. 프리랜서의 특성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에 전년도보다 소득이 줄었음을 증빙하려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 건강보험료 산출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해촉증명서의 발급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며, 통일된 기재 방식도 전무하다는 점이다. 발급 자체의 어려움이 프리랜서에게 부담스럽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과다 청구 가능성이 있어 프리랜서를 떨게 만든다.

해촉증명서뿐만이 아니다.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프리랜서가 절반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서울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프리랜서의 노동실태와 권익개선 방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프리랜서 582명 중 47.1%만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계약서 미작성은 임금체불의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킴으로써 그 자체로 문제다. 송명진(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구두계약 내용에 없는 일을 요구받거나, 비용 지급이 밀리거나 아예 돈을 떼이는 경우까지도 발생한다. 계약서 작성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계약서가 작성됐다 하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프리랜서에게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는 불공정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박주영(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계약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불공정 계약이 포함돼 그대로 적용된다면 훨씬 불리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프리랜서가 이토록 피해를 받아도, 현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마땅치 않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소송 진행이 최선의 방법인 수준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조차 프리랜서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 않다. 소송에 들이는 시간·금액적 비용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비대하기 때문이다.

우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자가 용역계약의 종료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현 건강보험료 산출의 허점은 해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실제로 2021년에는 이러한 취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송 사무국장은 "해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업체도 있고 기재 방식도 통일되지 않아 프리랜서의 불편이 크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자가 용역계약의 종료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안은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작성 의무 및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서 표준계약서란, 현재 정부가 업종별로 적절한 양식을 마련해 업계에 권고하고 있는 문서다. 박 부원장은 "계약서 작성 의무만을 법제화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존재한다. 나아가 계약상 권리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내용도 법제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활성화도 프리랜서가 처한 여러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다. 법률상, 프리랜서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를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도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면,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 단위로 사용자와 협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는 담합의 여지를 막을 수 있게 도와준다. 물론, 일하는 환경과 조건의 개선 역시 요구할 수 있다. 박채은(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프리랜서의 노동조합이 활성화된다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로서 역할하게 될 것"이라고 술회했다.

전문가들은 노동 관련 법안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가칭)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기존 노동 관련 법안이 담고 있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노동의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질 것이기에 전통적인 노사관계 등으로 대변되는 근로관계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은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했다. 다만, 법의 적용 대상이나 보호 내용을 두고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으나 노사 간의 입장 조율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선별적인 보호를 하면서 점차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이 있다.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충언했다.

더 나아가서는 『근로기준법』 자체를 개정해 근로자의 범위를 현재 노동 형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프리랜서는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기에 근로자와 차별이 발생할 여지가 잔존한다는 우려에서다. 안명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근로기준법』이 다양해지는 일의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에 장기적으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같은 일하는 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 교수는 "프리랜서는 노동 관련 법안의 사각지대의 놓여 있기에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사무국장은 "불공정 경제구조 고착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기업 업무의 외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노동 시장 내 프리랜서와 같은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 장치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수고용 : 근로자와 계약자 사이에 일대일 고용 관계를 가지나, 공간 · 시간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에 비해 비교적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고용

**비임금 :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보수를 받는 형태가 아님

김기현 기자 kimgihun30@gmail.com

비임금근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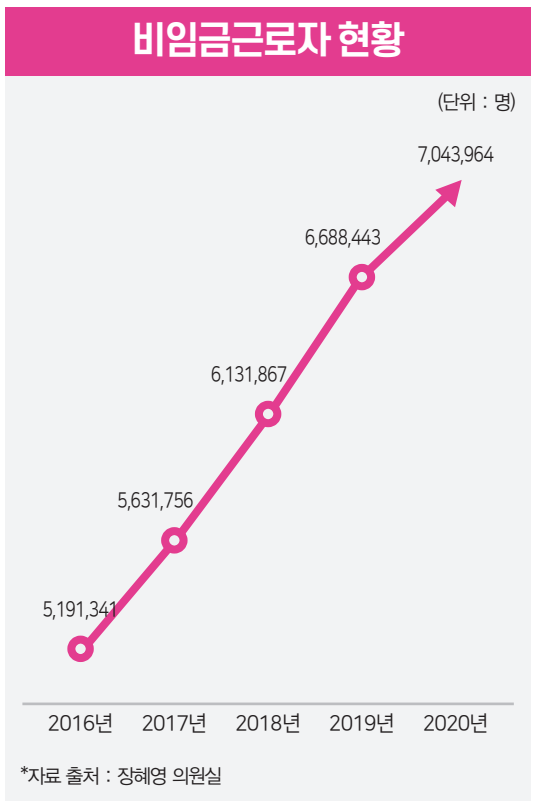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장혜영 의원실

프리랜서 서면계약서 작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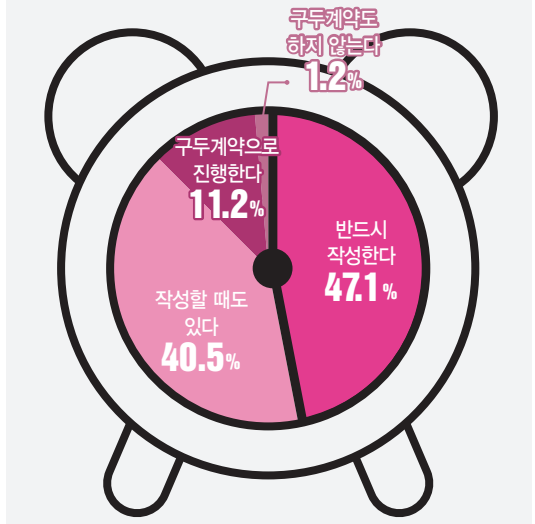

*대상 : 서울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프리랜서 582명
*자료 출처 :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프리랜서의 노동실태와 권익개선 방안」

"정기자와 나누는 정치 수다"

국회의원이 체포를 피하는 방법

노웅래, 이재명, 하영제. 최근 3개월 동안 저마다의 이유로 '구속' 여부에 관심을 끌게 한 국회의원들이다. 특히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이끄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체포동의안 부결 등의 사건은 연일 신문의 1면을 장식했다. 하영제(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잇따라 국회에 보고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갑론을박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불체포특권은 특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지 않을 권리다. 피고인이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 발부를 담당 판사에게 요청해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인물이라면 검사는 함부로 그를 구속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이 불체포특권을 보장 받는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현행범인이 아닌 국회의원을 국회의 동의 없이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이에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체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판사가 구속할 필요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를 거쳐 국회로 전달하고, 국회에서 해당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는 과정이다.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가결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국회의원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있다. 부결 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언제부터 국회의원은 함부로 체포될 수 없다는 특권을 가지게 됐을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역사는 의회정치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부터 시작한다. 일찍이 귀족 중심의 의회가 발달한 영국에서는 의회와 국왕이 자주 충돌했다. 특히 1603년 영국의 왕으로 즉위한 제임스 1세는 사사건건 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의원을 체포해 감옥에 가둬 버렸다. 이에 강하게 반발한 의원들이 국왕은 의원을 임의로 체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회특권법'을 제정했다. 세계 각국의 헌법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보장되기 시작했다.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일을 막기 위해 세계 선진국 모두가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회의원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이 최근에 와서는 국회의원에 의해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국회로 전달된 체포동의안 41건 중 8건만이 가결되며,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의 비리나 범죄에 대한 구속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가장 최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부결'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방탄 국회라는 촌평은 피할 수 없었다. '불체포특권 폐지' 여론이 형성된 이유이기도 하다. 차진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체포특권의 행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시 국회 소집 등의 행태는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며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으로 인한 비판적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불체포특권을 정말로 폐지할 수 있을까. 헌법학자들은 불체포특권이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장치이기에, 오남용된다는 이유로 바로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입을 모은다.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활동이 크게 저해되는 독재정권이 끝나고 민주적 정치체제가 자리잡았을지라도,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방해하는 환경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덕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쿠데타와 같은 극단적인 예시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권위적인 정치 체제, 법관의 독립성이 준수되지 못하는 상태 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전부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윤철(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나 제도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없어서는 안 되는 권한"이라고 힘줘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체포특권이 그 취지에 맞게 작동하려면, 국회의원이 표결에 임하는 자세와 유권자로서의 국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률적 보완보다도 말이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의 기명투표화', '48시간 내 표결하지 않을 시 가결로 간주' 등 법률적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공주(상지대학교 법률행정학과) 교수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 데 대해 정치권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에서 체포동의안 가·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말고 국회의원 각자의 소신대로 표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 교수는 "국민이 불체포특권을 오남용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비판하는 방식을 통해 불체포특권이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상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내 손으로 뽑는 총장, 대학 자치의 첫걸음

〈편집자주〉

학생식당 식사 가격 상승, 등록금 인상, 수강신청 정원 확대… 대학생의 생활에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문제들이다. 대학의 행정은 학생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학생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가 나서서 입장을 밝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모든 학생이 총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학생이 대학의 대표자이자 행정 수반인 총장에 대한 선출권을 가진다면, 학생의 목소리가 대학의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원, 직원 등 대학을 이루는 다른 구성원에게도 마찬가지다.

대학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총장선출권은 대학 구성원에게 있어야 한다.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대학이다. 그렇기에 대학은 설립·운영주체와 관계없이 공공성을 띤다. 하지만 마땅히 민주시민을 길러야 할 이곳은 정작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표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총장선출권이 대학의 구성원에게 귀속돼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총장선출에 구성원이 전부 참여하는 민주적인 방식이 정착돼야 한다.

'총장직선제'는 총장선출방식 중 가장 민주적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총장직선제는 엄밀한 의미의 직선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개선돼야 할 점이 명확히 존재한다. 이에 본지는 현 대학사회에서 총장직선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총장직선제가 구성원에게 가져다 줄 이점과 나아가야 할 바를 짚어봤다.

정상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현행 법률은 대학의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사립대학 총장은 해당 대학이 소속된 학교법인이나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말이다. 국·공립대학의 총장 임명권자는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다. 해당 법률 제24조에서,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같은 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련된 법률에 입각해 보면, 엄밀한 의미의 총장'직선제'는 요원하다. 구성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의미를 고려한다면, 총장직선제는 대학의 구성원인 모든 교원·직원·학생이 투표에 참여해 총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총장 임명권을 가질 수 있는 주체는 법률상 학교법인 이사장·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돼 있기에, 구성원의 선거 결과만으로 총장을 선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총장직선제는 대학 구성원이 직접 선거를 통해 복수의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면, 총장 임명권을 가진 자가 후보자 중 1명을 총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직선제와 간선제가 상존하듯, 총장선출방식에도 총장간선제가 존재한다. 간선제 하에서는 구성원 중 일부만이 소속되는 '선거인단'이 구성되고, 선거인단에 소속되는 인원만이 대표자 선거에서 표를 던질 권한을 갖는다. 총장간선제가 운영되는 대학에서는 흔히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라고 불리는 위원회가 선거인단의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위원회에는 학교법인 이사·교원·직원·학생·동문 등 각 직역의 대표자가 위원으로 소속돼 있다. 역시나 법률에 따라 총장 임명권자는 한정돼 있기에, 총추위가 선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 중 1명을 임명권자가 총장으로 선임한다. 이같은 방식이 일반적인 의미의 총장간선제다. 총장이 아닌 '총장 후보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총장직선제와 유사하다.

대학 구성원의 추천 과정 없이, 총장 임명권자가 바로 총장을 임명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완전임명제'라 불리는 해당 방식은 3개의 총장선출방식 중 가장 비민주적이라 평가 받는다. 앞서 언급된 『교육공무원법』에서 국·공립대학 총장 선출은 대학 구성원의 추천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국·공립대학은 총장직선제나 총장간선제를 따른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립대학은 추천 과정 없이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완전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부 사립대학은 추천 과정이 포함된 총장직선제·총장간선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총장직선제를 시행하는 사립대학은 극소수다.

본지가 총장선출방식의 현위치를 파악하고자 수도권 4년제 대학 77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총장직선제를 시행하는 대학은 전체의 19.5%(15개)였다. 총장간선제로 진행하는 대학은 33.8%(26개)였고, 완전임명제를 채택한 대학은 46.8%(36개)로 가장 많았다. 절반에 육박하는 대학이 구성원에 대한 의견 수렴이 결여된 채 총장을 선임하는 것이다. 특히 68개의 사립대학만을 떼어놓고 보면, 8개 대학만이 총장직선제를 따른다.

사립대학이 유독 총장직선제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총장직선제를 도입하면 대학 구성원의 의견에 맞는 총장을 임명하게 되니, 학교법인이 추구하는 대학의 운영 방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학의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학교 운영을 대표하는 총장에 대한 선출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추위에서 선출한 후보자 가운데 총장을 임명하는 사립대학의 총장간선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총추위에는 대학의 각 구성원 대표자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이사회를 대표하는 위원이 함께 소속되기 때문이다. 이사회 대표의 정수가 전체 총추위원 수의 과반에 근접하거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총추위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일부 사립대학에서 존재한다. 또는 '사회인사 대표', '대학발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명하는 총추위원이 소속돼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해당 사립대학 학교법인은 총장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과정에서마저 이사회의 '입김'을 강하게 작용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학교법인이 원하는 총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 총장간선제가 형식적 절차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 연구원은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총장 선임의 최종 결정권을 이미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총추위에 이사회 대표를 소속시키는 것은 '총장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총장간선제 도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꼬집었다.

총장직선제와 비교했을 때, 총장간선제의 한계는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총장직선제 하에서의 선거권이 대학 구성원 전체에게 주어지는 반면에, 총장간선제에서 선거권은 총추위원에게만 돌아간다. 소수의 인원에게 권한이 집중됨에 따라, 모든 유권자의 선호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총장직선제 시행 대학 중 하나인 조선대학교의 교수평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명식(조선대학교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는 "총장간선제 하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직역별 대표자를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학에 따라 그 부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전언했다.

그렇다면 현행 총장직선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총장선출제도일까. 현행 총장직선제의 가장 큰 개선점은 투표 반영 비율이 교원에게 치우쳐져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 총장직선제를 시행하는 4년제 대학 14개의 직역별 투표 반영 비율 평균을 산출한 결과, 교원의 투표 반영 비율 평균은 78.9%였다. 직원과 학생은 각각 13.8%, 6.4%의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80%에 육박하는 투표 반영 비율이 교원에 집중돼 있어, 총장직선제를 시행하는 대학에서는 매 선거 때마다 직원과 학생 측에서 투표 반영 비율 확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김병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과거에는 교원만 투표권을 행사해 총장을 선출하는 '교원직선제'를 시행한 대학도 있었다"며 "총장은 교원만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교원만의 선거로 총장이 선출됐기 때문에, 오히려 구성원 간의 갈등이 증폭됐다"고 전했다.

학생 측은 세 직역 중 가장 낮은 투표 반영 비율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직원과 같은 비율인 대학도 일부 존재한다. 김서원(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은 "대학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구성원은 학생이며, 대학의 정책과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구성원도 학생"이라며 "현재의 투표 반영 비율은 대학이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직원과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을 늘려야 할 뿐 아니라, 대학 내의 더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강사 등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아닌 교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나 비전임교원이 연구·교육을 통해 대학에 기여하는 바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강사의 경우, 실제 학생을 교육하는 일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처우나 권한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총장선거일 기준 담당하고 있는 강의가 있다면 투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장직선제가 진정한 의미의 직선제로 거듭나려면 총장 임명권이 이사회나 정부에 귀속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총장 임명권은 학교법인에, 국·공립대학은 중앙·지방정부에 속해 있다. 때문에 대학 구성원이 총장직선제를 통해 원하는 인물을 1순위 총장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나 정부가 해당 후보자를 총장으로 선임해 주기를 바라야 하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대학에서 시행하는 '2순위 후보자의 총장 선임에 대한 구성원 투표'가 거론된다. 국·공립대학에서는 총장후보자 선거를 진행할 때, 모종의 이유로 인해 1순위 후보자가 정부로부터 임명이 거부될 경우 2순위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투표를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이후 1·2순위 총장후보자를 정부에 추천할 때 해당 투표 결과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구성원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총장 임명권을 학교법인에 귀속시키지 않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학교법인의 반발 등 어려운 부분이 분명해 보인다"며 "2순위 후보자 총장 선임 여부에 대한 구성원의 의사 전달을 사립대학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보완책"이라고 전했다.

대학행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총장직선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총장직선제가 가장 효율적인 총장선출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학 구성원의 입장에서뿐 아니라, 대학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장점이 분명한 제도라는 것이다. 직선 총장은 구성원의 손에서 탄생한 대표자이기에 임명 총장이나 간선 총장보다 확실한 정당성을 가지고 대학을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대학교 교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양진오(대구대학교 문화예술학부) 교수는 "대학 구성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무행정의 대표자가 바로 총장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총장을 선출하는 총장직선제는 학교 발전에 도움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약'을 내걸고 선출 과정이 진행되기에, 대학 구성원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것도 총장직선제의 강점으로 꼽힌다. 공약을 통해 후보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학교를 운영할지 파악할 수 있고,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오 교수는 "학교 운영의 방향성과 비전이 미리 공표되기 때문에, 대학 구성원이 선출 이후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총장직선제가 장기적으로 운용되고, 안정성을 갖춘 제도가 되려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대학 구성원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꼽는다. 지속적으로 총장후보자 선출에 관심을 가지는 일 자체가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교수는 "민주적 리더십의 풍토가 잘 자리 잡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각 구성원의 알 권리와 참여권에 대한 고민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대학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 신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동이 총장직선제의 확대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언급된다. 학생이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에게 총장선출권을 부여하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은 "다수의 학생들이 '내가 관심을 갖는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주로 한다"며 "대학생으로서 나의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한다면, 그 답은 총장직선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수도권 4년제 대학 77개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학'·'교육대학', 산업·전문·원격·기술대학과 각종학교를 제외한 범주이며, 이원화 캠퍼스는 본교와 동일한 대학으로 간주하고 분교는 본교와 상이한 대학으로 처리했다.

수도권 대학 총장선출방식 전수조사

*본 그래프들은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수도권 대학의 총장선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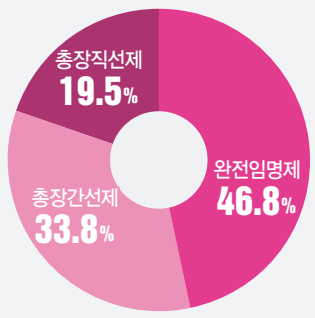

*대상 : 수도권 4년제 대학 77개

총장직선제 시행 대학의 직역별 투표 반영 비율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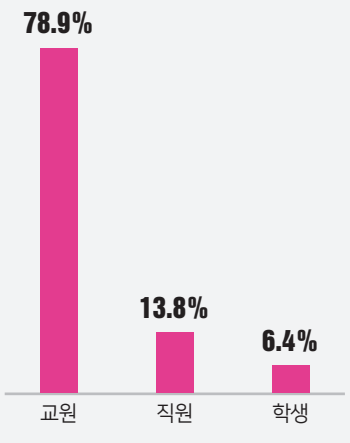

*대상 : 수도권 4년제 대학 중 총장직선제 시행 대학 14개
*경희대학교는 교원과 직원·학생이 각각 총장후보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이 통계에서 제외됐습니다.

〈편집자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상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다. 아동이 가정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면 사회에서 아이들을 '보호'한다. 상대적으로 일찍 가정을 떠난 보호아동은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명칭으로 사회에 나선다. 아동복지시설의 생활은 각자 다른 사정으로 시작되지만, 대개 만 18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종료된다.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에서 보호받는 대부분의 아동보다 일찍, 홀로 생활을 시작하는 만큼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특히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부재로 인해 삶의 배경지식이 보다 적게 형성되면, 대화의 공통 주제가 충분치 않아 타인과의 관계 형성도 쉽지만은 않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립되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으며, 외로움을 크게 느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아동복지시설 출신으로, 이 같은 문제 상황을 여실히 느낀 '몽실커피'의 이진희(29) 대표는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기댈 곳'을 형성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그저 잠시 기댈 휴식처를 넘어, 사회에서 자립준비청년이 '머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이 대표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 그리고 그곳에서는 또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

장현진 기자 glenntravel1081@gmail.com

사진 : 정상혁 기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꿈을 함께 꾸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몽실커피 이진희 대표

아동학대를 겪다 학교 선생님의 신고로 가정과 분리돼, 중학교 때 아동복지시설로 입소한 이 대표. 단체생활과 여러 규율에 얽매이는 것에 지쳐 퇴소를 선택하는 보호아동들도 있는 반면, 그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생활이 예상보다 더 편하고 즐거웠다고 회상한다.

"처음에는 고아원이라고 하면 정말 부모가 없는 아이들만 있다고 생각해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걱정이 선행했어요. 그러나 막상 가서 지내보니 가정에서 생활할 때보다 훨씬 편하고 즐거웠어요. 가지각색의 배경을 가진 아이들과 지낼 수 있어 좋았죠."

고등학생 시절 이 대표는 하루빨리 취업하고자 노력했다. 원칙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다. 그 이후에는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독립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보호아동은 가정이 온전치 못했던 경우가 많기에, 원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때가 많다. 독립할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말이다. 이 대표는 독립할 자본을 만들기 위해 취업에 몰두했다.

"저는 스스로 앞날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이 때문에 돈을 빨리, 그리고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학교에 존재했던 취업반에 들어갔죠."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보호아동은 퇴소 일자를 모두 채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독립을 시작했다. 알고 지내던 언니의 집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롯이 혼자 나왔던 것이 아니기에 자립준비청년이 흔히 겪는 외로움 등의 문제는 없었으나, 정보의 부재로 맞닥뜨리는 현실의 벽은 있었다고 술회한다.

"빨래 같은 정말 기초적인 생활도 시설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세탁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는 도시가스나 전기를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너무나 당연한 기본 상식이라 그런지 당시에는 인터넷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라 요즘은 다르겠지만요. 보일러 온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적절한 온도는 몇 도인지조차 알지 못했죠. 가정에서 자라면 당연히 보고 배울 수 있는 기초적인 것들을 저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주변에 물어볼 어른조차 없었으니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그는 보호아동이었다가, 자립준비청년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됐다. 이 대표는 직접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과 같이 시설에서 성장했던 아동들을 떠올리게 됐다고 이야기한다. 고등학교 시절에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있었던 이들과, 그의 자식들이 가정에서 누리는 것에서 큰 괴리를 느꼈기 때문이다.

사진 : 정상혁 기자

▲이진희 대표가 카페 '몽실커피' 내부의 한 공간에 서 있다.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제 자식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을, 너무나 사소한 것들까지 당연하게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제 아이를 키우면서 시설에 있던 아이들 생각이 계속 났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때마침 이 대표가 퇴소했던 아동복지시설에서 그에게 '1:1 자립멘토링'을 요청해왔다. 그동안 바라왔던 보호아동을 돌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립준비청년이 돼 시설을 퇴소하니, 관계는 끊어지게 됐다.

"제가 맡았던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함께 외출도 하고 여행도 다녔죠.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게 되니, 저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보호아동과 지속적으로 만날 방법을 강구하다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보자고 결심했죠."

이처럼 이 대표가 지금까지 삶의 경험을 토대로 느낀 자립준비청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적 네트워크의 결여부터 시작된다. 부모 등의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어린 시절 자신들을 챙겨주고 보듬어줄 가정이 없었던 아이들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정보의 고립을 초래하고 경험의 부재를 낳는다. 아동복지시설이 보호아동에게 필요한 충분한 가정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대표는 자립준비청년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몽실커피'다.

"자립준비청년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더 잘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존하는 경제, 부동산 교육 등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심리와 내면을 다루는 것이 더 필요해요. 내가 왜 일해야 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조차 없는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교육을 제공해봤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세상엔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 너무 많으니 스스로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살아갈 힘이 있지 않을까요."

카페를 창업하는 방식으로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돕고자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는 기부나 봉사활동 등의 방법은 결국 '일회성'이라고 전언한다.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이다.

"처음에는 사무실과 같은 공간을 대여해서 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과의 모임 장소로 활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 처지에서 생각해보니 사무실이라고 하면 편하게 오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고민을 거듭하던 와중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게 됐고, 이를 카페 창업에 접목했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카페라면 누구라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니까요."

몽실커피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동시에 목표를 정하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많은 경험과 정보를 제공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나들이 프로그램'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1 자립멘토링, 퇴소한 아동들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이 존재한다. 이 중 1:1 자립멘토링은 상술한 봉사활동을 지속한 프로그램이다. 3가지의 프로그램 외에도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별한 날에는 이벤트성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나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선배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과 여러 놀거리를 즐겨요. 예를 들어, 부산의 롯데월드를 방문하거나 태화강에서 자전거를 타요. 1:1 자립멘토링은 정말 다양한 활동이 진행돼요.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활동 중 하나는 멘토의 집에서 숙박하는 활동이에요. 선배의 집에 방문해 직접 요리와 빨래를 해보며 독립한 이후의 삶을 체험해보는 거죠. 정보와 경험의 부재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커뮤니티 활동은 비정기적으로 이뤄지지만, 지속적인 교류 활동이에요.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과 축구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사진 제공 : 이진희

▲이진희 대표가 'KRX 드림나래' 발대식에서 강연했다.

이 외에도 그는 다방면으로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한 걸음씩 다가가려 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보다 많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이나 캠핑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기획 중이며, 아직 만나보지 못한 다른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들과 가정위탁아동들을 고려해, 커뮤니티의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경험과 몽실커피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 대표는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주최한 'KRX 드림나래' 발대식 행사에서 강단에 섰다.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KRX 드림나래' 발대식에 강연자로 초청받았어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몽실에 대한 이야기와 탄생 배경을 설명하고, 또 제가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게 된 계기와 퇴소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죠."

'몽실'은 꿈 몽(夢)과 열매 실(實), 즉 '열매를 꿈꾼다'는 의미다. 씨앗의 성장 여부는 지금 당장 알 수 없지만,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이 대표는 몽실의 브랜드 정체성을 씨앗이 자라 열매를 이룸에 비유한다.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당장의 현실은 땅에 묻힌 씨앗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느끼겠지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또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는 모든 자립준비청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사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행위나 경험으로 얻는 행복과 함께, 그저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로 행복한 가정도 이뤄보기를 바란다.

"저는 어느 순간 남편, 아이와 함께 길을 걷다가 '아, 이게 행복인 거구나' 하고 문득 깨달았어요.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이런 것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그저 존재 그 자체로 있을 때 행복한 것. 이 감정을 모든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깨어진 가정에서는 경험하기 힘드니 말이에요. 저도 가정을 이룬 후 생각이 많이 바뀐 것인데,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가정에서 얻게 된 결핍 등을 회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위태롭고도 위대한 챗GPT

〈편집자주〉

"수업 끝나고 한성대학교 근처에서 어디 가서 놀지 추천해줘." 타닥타닥. 친구에게 채팅하듯 수업 후 놀거리를 묻자 'ChatGPT(이하 챗GPT)'는 답했다. "한성대학교 근처에는 다양한 놀거리가 있으니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중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성북천은 한성대학교 근처를 흐르는 강이며, 주변에는 많은 산책로가 있습니다." 챗GPT는 직접 인터넷 창에 검색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궁금증을 해결해줬다.

챗GPT는 어떻게 우리 학교 근처에 성북천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답했을까? 그 찰나의 순간에 지도나 블로그를 찾아봤는지, 혹시 챗GPT를 조종하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등의 궁금증이 피어오른다. 챗GPT는 어떻게 사람처럼 말하는 걸까? 알쏭달쏭한 챗GPT가 정보를 학습하고 문장을 만드는 원리부터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전격 해부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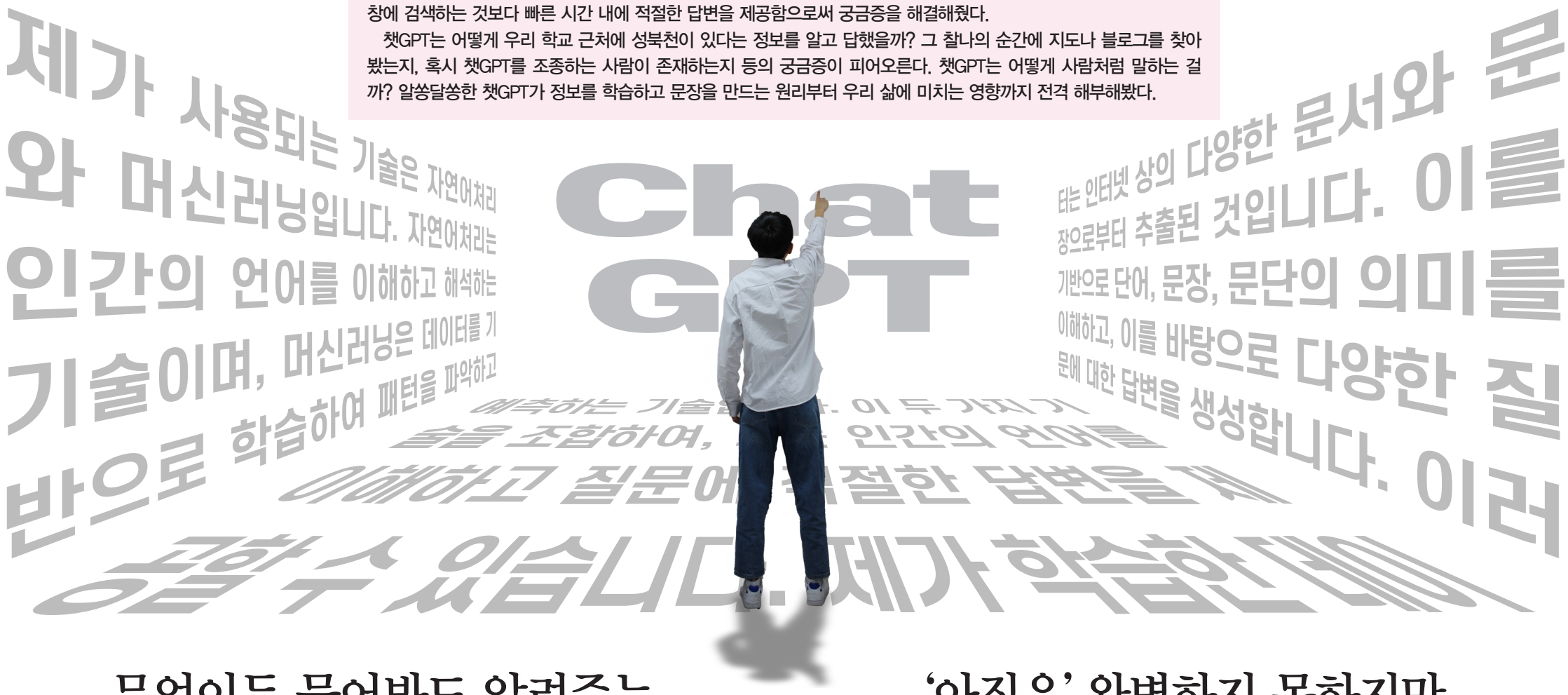

무엇이든 물어봐도 알려주는

챗GPT는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기업인 'Open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흔히 불리는 '챗봇(Chatbot)'의 일종이다. 일명 '구글링'으로 대표되는 검색이 나열식 정보 속 원하는 정보를 찾는 방식이라면, 챗GPT는 사용자와 이뤄지는 대화 속 질문에 대해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김준영(중앙대학교 AI학과) 교수는 "사용자는 챗GPT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주목받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결과물을 생성한다. 기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해하는데 그쳤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등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

챗GPT는 '대화'를 의미하는 'Chat'과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합성어다. 여기서 언어 모델은 주어진 단어나 문장 다음에 오게 될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역할을 한다. 즉 가장 자연스러운, 확률이 높은 단어를 할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옷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언어 모델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높다'가 아니라 '크다', '싸다' 등을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챗GPT를 사용해보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단번에 출력되지 않고, 계산 과정을 거쳐 확률이 높은 단어부터 차례로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대규모' 언어 모델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경우다. 기존 언어 모델과 비교해 대규모 언어 모델은 인터넷을 통해 취득한 무수한 기사, 문서, 책 등의 데이터를 학습했기에 비교적 장문의, 그리고 정교한 글을 생성할 수 있다. 김영빈(중앙대학교 다빈치AI대학원) 교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복합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챗GPT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GPT에는 '트랜스포머(Transformer)', 사람의 말인 자연어를 처리하는 기술이 들어있다. 가령 100개의 단어로 이뤄진 문장이 있다면, 트랜스포머는 모든 단어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 단어와 백 번째 단어 간의 관계까지 말이다. 때문에 이전과 달리 멀리 떨어진 단어 간의 관계도 파악하게 되면서 긴 글에 대한 이해와 생성이 가능해졌다. 김준영 교수는 "기존 기술이 해당 단어의 주변부에 있는 단어 간의 의미만 파악할 수 있었다면, 트랜스포머는 모든 단어 쌍의 관계를 고려해 새로운 단어를 출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챗GPT의 성능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려면 주요 지표인 '파라미터(Parameter)'에 주목해보자. 챗GTP의 '용량'으로 간주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학습 능력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구버전인 GPT-2는 15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졌으나, GPT-3.5는 1,750억 개 넘는 파라미터가 존재한다. 점차 용량이 커지면 더욱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고, 이는 더 나은 결과 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준(한성대학교 AI응용학과) 교수는 "파라미터가 늘어나면 더욱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한다"며,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인공지능은 더욱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전했다.

챗GPT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킨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사람'이다. 사람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인간 피드백형 강화학습, 즉 'RLHF(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로 불리는 학습 방법이 적용된다. RLHF는 ▲SFT(Supervised Fine-Tuning) ▲RM(Reward Model) ▲PPO(Proximal Policy Optimization) 등의 과정을 거친다. 하나의 질문에 대해 여러 사람이 직접 쓴 답변을 챗GPT에게 학습시켜 미세하게 조정하는 과정을 'SFT'라 한다. 이후 학습된 모델이 재차 답변을 출력하도록 한 후 사람이 이 답변에 대해 점수를 매긴 후 재차 학습시킨다. 이를 'RM'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PPO'라는 과정을 통해 사람이 선호하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학습된다. 지 교수는 "확률이 높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지' 등의 여부를 염두에 두지 않는 챗GPT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GPT가 옳은 정보를 전달하는 완벽한 인공지능은 아니다. 문장 자체는 매끄러우나,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문장에 넣어 그럴듯하게 답하는 환각,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이 발생한다. 관련 데이터가 없어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답변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지식이 학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챗GPT가 관련 정보를 학습하지 못했을 때도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지 교수는 "챗GPT는 아직 학습이 부족하다"며, "관련 학습이 더 많이 이뤄진다면 환각 현상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전히 사용자와의 모든 대화를 기억할 수 없다는 부분도 챗GPT의 한계다. 현재 무료 버전인 GPT-3.5는 최대 4,096토큰(Token)* 분량의 텍스트까지 기억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출시된 GPT-4의 경우, 최대 32,768토큰(약 50페이지 분량)을 가져 더 많은 대화를 잊지 않을 수 있다. 김준영 교수는 "챗GPT는 질의응답이 일정량 쌓이게 되면, 앞에 있던 내용을 잊어버린다. 이는 기술력의 한계이자 모델 크기의 한계로 볼 수 있으나, 점차 해결될 문제"라고 부연했다.

*토큰 : 어휘 항목이 의미상으로 구분되는 최소 분류 단위

김기현 기자 kimgihun30@gmail.com

'아직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어떤 질문이든 막히지 않고 술술 대답해주는 챗GPT가 우리 일상 속으로 가깝게 다가왔다. 대학가는 개강과 동시에 '챗GPT를 활용해야 하는가',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으로 뜨거웠다. 실제로 국민대학교는 개강 시기에 맞춰 발 빠르게 'KOOKMIN 인공지능 교수학습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다. 챗GPT를 활용하는 강의도 대학가에서 꽤나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내찬(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챗GPT의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유정(전북대학교 과학학과) 교수는 "이번 학기는 통상적으로 가르쳐왔던 수업 계획을 대폭 수정해 학생들이 챗GPT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챗GPT에는 '빛'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일례로 출처가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임의로 생성해 사용자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소위 챗GPT의 '환각' 증세다. 이는 챗GPT가 사람이라 가정한다면 자신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이야기하는 모습일 테다. 아직 인공지능 자체가 자신이 뱉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해 해당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인복(한국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챗GPT는 '그럴싸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문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에 소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차성종(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검색엔진에 의한 결과는 출처를 통해 정보의 공신력을 따질 수 있지만, 챗GPT가 내놓은 정보는 근거를 알 수 없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술회했다.

이에 더해 답변 제한을 교묘히 피해 답변을 유도하는 '탈옥' 등의 방법도 나타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서 윤리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챗GPT는 차별, 혐오 표현 및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 탈옥은 이러한 답변 제한을 피해 가는, 윤리적 중립성을 우회하는 수법이다. 탈옥의 알려진 방법으로는 챗GPT에게 OpenAI사의 답변 제한 정책을 회피하는 몇 가지 조건을 학습시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 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윤리적 중립을 피해 가는 현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이 가장 중시 여겨진다.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인공지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넘어 더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정보 윤리의 문제는 더욱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용환(차 의과학대학교 데이터경영학과) 교수는 "단순 코딩 학습과 같은 교육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배경재(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고, 터득한 활용 방법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리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탈옥과 같은 답변 생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언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화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술 발전보다 앞선 법은 국가 경쟁력의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성희(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고의로 인공지능의 안전장치를 제거한 후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을 사용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법안이 마련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기술보다 앞선 법으로 인해 기술 발전의 길이 막히게 될 경우 다른 모든 나라가 개발해 이용하는 기술을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술회했다.

일각에서는 탈옥의 발생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사용자의 활용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 교수는 "탈옥은 동전의 양면 같이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탈옥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절대 기술적으로만 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오늘날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기술 발전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만, 탈옥은 보다 복잡한 사회·정치적 문제로 더 나은 기술의 등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은 오래전부터 발전해온 분야임에도 챗GPT는 이용자 입장에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로 체감되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챗GPT는 아직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는 신생기술이자 미성숙한 기술이기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현재는 챗GPT의 올바른 사용법을 확대해가며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라는 설명이 이어진다. 최재원(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존하는 챗봇은 시간·경제적으로 장점이 많은 분야지만, 여전히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이 존재하는 상태로 챗GPT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박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인공지능의 활용 정도와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 학 송

총장선출, 남의 일인가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상상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학생식당으로 향할 때 눈길을 사로잡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목도한 경험이 있는가. 지난 2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한성대학교 지부(이하 노동조합)가 직원의 총장선출투표권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법인 한성학원은 이에 대해 노동조합과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밝히며, 학생 의견 수렴 가능성 또한 내비쳤다. 학생인 본인의 이목을 끌고, 희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민주적인 대학을 위해서는 총장직선제가 시행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왜 대학은 민주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면, 사회 속의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곳이 대학이라는 답을 내놓고 싶다. 대학에서부터 민주적으로 지도자를 뽑아내는 경험이 부재한데, 어찌 한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기능할 수 있겠는가. 학생들은 학교에서부터 실질적인 주요 주체로서 인식되는 경험이 필요하다. 총장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총장직선제가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의 투표권을 교원과 동일하게 1인 1표로 보장하는 대학은 전무한 상태다. 총장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들도 학생의 투표권을 1인 1표로 온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 비교적 학생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도 20% 정도만을 반영하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도 학생사회에서의 논의는 다소 소극적인 모양새다. 물론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해 농성을 벌이는 총학생회가, 학생을 대상으로 총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실시하는 대학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사회 전체를 두고 보자면 티끌조차 되지 않을 만큼의 비율이다.

왜 학생사회는 잠잠할까. 학생들은 총장선출 투표권을 가지는 것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눈앞에 산적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느라 급급할 뿐이다. 학생 개인과 밀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자. 당신은 본인과 동기, 선배, 후배까지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가.

학생사회는 진보해야만 한다. 스스로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모든 개인에게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이를 위해 학생대표들이 나서야 한다. 학생들의 관심을 고취시킬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본교 총학생회장은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최종적으로 교수, 직원, 학생 모두 총장선출과 관련한 각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종'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다만, 이 사안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학생이 결집하고, 학생사회가 하나 된 목소리를 외치는 그날을 기다려본다.

한혜정 편집국장

좁은 수업의 문을 열기 위해

지난 13일, 이화여자대학교 정문에서 학생 수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의 주체인 '이화인 수업권 찾기 프로젝트 〈CLASS UP〉'은 수강신청 이전, 단과대학 등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강의 수요조사 대신 대학본부 차원의 강의 수요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 조사를 통해 강의 분반 및 정원 부족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엄연한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은 찰나의 순간, 클릭 한 번에 권리를 잃는 학생을 위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김기현 기자 kimgihun30@gmail.com

기자수첩

방관 아닌 조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 했던가. 우습게도 한국은 2015년부터 해마다 1만 명 이상의 마약류 사범이 국내에서 검거되고 있다. 마약류는 마약과 향정신성 약물, 대마를 통칭하는 단어이며, 마약류 사범이란 마약류와 관련해 ▲밀조 ▲밀수 ▲밀매 ▲투약 등 마약과 관련된 범죄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뜻한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 사이 마약류 사범 건수는 20.1% 증가했으며, 특히 20대가 전체 31.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마약류의 유통은 보통 음지를 통해 퍼지겠거니, 추측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류도 문제지만 병원에서 프로포폴, 졸피뎀 등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모르핀, 펜타닐 등의 마약성 약물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의사는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의심될 경우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수면내시경을 15번 받아, 프로포폴을 15번 투여받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의약품의 유통 전주기를 추적하고 취급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단순히 의약품의 유통 전주기를 추적한다고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는 없다. 병원이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성 약물을 처방할 시, 담당의가 필수적으로 해당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조회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또한 처방 가능한 투약 횟수나 주기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병원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마약류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전문의가 환자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사회 관념상 정당 시 되는 행위를 업무로 행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마약 중독은 '완치'라는 개념이 없다. 1년 이상 단약에 성공하는 사람이 3명 중 1명꼴이기에, 평생 관리해야 하는 '난치병'과 같다.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도 이것일 테다. 실제로 법무부가 발표한 '2017-2019 마약사범 재범률' 자료에 따르면 해당 3년간 마약 사범들의 재범률은 평균 36.2%다. 한 번 손을 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과 같은 '마약'의 늪, 늪에 빠진 이들에게 동아줄을 내려줘야 한다.

장현진 기자 glenntravel1081@gmail.com

낙산만평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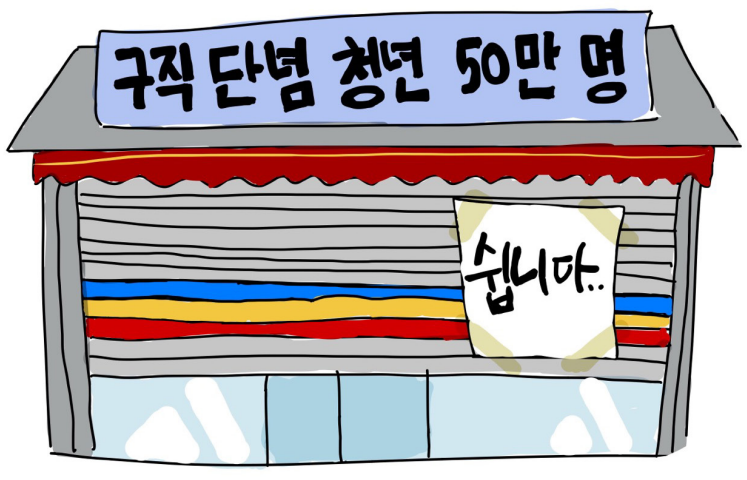

낙산에 올라

형평과 사법불신

형평은 한국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덕목이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되며 이는 우리에게 역린을 건드린 것과 같다. 그렇다면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는 주로 어디서 일어나는가. 주로 정치권에서 일어난다. 좀 더 좁혀서 얘기하자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는 곳이 있다. 바로 헌법재판소를 위시한 사법부다.

두말할 나위 없이 사법부의 판결은 분명 중요하다. 이 중 법률이 헌법 가치에 맞는지 따지는 헌법재판소는 그 사회의 인식과 가치관을 함께 반영한다. 그러나 가끔-이라고 믿고 싶지만- 헌재가 사회의 인식과 가치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4년 전, 헌재는 사문화되어 있던 낙태죄를 일부 위헌이라 결론지었다. 작년 7월엔 사형제에 대해서도 변론이 있었다. -두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쟁은 일단 접어두고, 필자는 사형제는 찬성하나 낙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두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만약 헌재의 뜻대로 되어 마땅히 죄가 있는 사형수는 계속 살려두며 한편으론 태아를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유럽같은 사회가 된다면 참으로 기이하지 않겠는가.

지난주, 헌재는 불법 주거침입 후 추행까지 저지른 경우 무조건 실형(기소/집행유예 등 형 유예 없이 즉시 처벌 시행)을 내리는 성폭력처벌법이 위헌이라 결론지었다. 이쯤 되면 헌재는 국민들의 의식과 동떨어진 사고를 하며 사법불신만 양산하는 기관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상식과 형평성이라는 한국 사회의 가치관을 고려했다면, 비상식적인 판결은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현행 사법부의 수뇌 구성은 대통령의 임명와 각 정당에서의 추천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볼 때, 아직 대한민국 사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 등 정치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때마다의 정치상황에 따라 판결이 바뀌며 이미 법관은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인데다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사건에서 보듯 테러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 이럴수록 법관의 독립을 보다 확고히 하며, 판사들의 사조직들 또한 엄금하는 등 사법부를 정화할 필요가 있다.

김준원(사회과학 3)

기자사령

임
수습기자 김유성(인문 2)
박건희(인문 1)
변은찬(인문 3)
신지원(인문 3)
오소현(인문 3)
이채연(ICT 1)
황서연(상상력 1)

동정란

나은미(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나 교수는 지난 1월 1일 '한국사고와표현학회'의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문찬(스마트경영공학부)
문 교수는 지난 1월 1일부터 2년간 '한국상품학회'의 학회장을 맡게 됐다.

이지영(상상력교양대학 소양핵심교양학부학부)
이 교수는 '한국여성심리학회' 2023년 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을 역임하게 됐다.

이태주(상상력교양대학 소양핵심교양학부학부)
이 교수는 2023년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 창 원 편집인겸주간 박 선 옥 편집국장 한 혜 정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의화정

최선의 선택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한다. 오늘은 뭘 입을지, 점심은 먹을지 등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150가지 이상의 선택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선택뿐 아니라 인생을 바꿀만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을 겪으며 살아간다. 선택의 순간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의 장단이 비슷하여 또는 오히려 상충 관계적으로 달라 미래에 기대되는 이득의 우열이 명확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득의 차이가 크다면 애초에 고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작은 차이를 구분하려 고민하고 가장 나은 선택을 하고자 노력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최선의 선택을 내린 것일까?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최선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건 시간이 지나 그 선택과 결부된 결과들이 충분히 나온 뒤에나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오라클(oracle)이 아니기에 그 선택이 옳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지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라클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이 우리에게도 진정 최선의 선택으로 여겨질 것인가? 우리가 운이 좋게 오라클이 판단한 최선의 선택을 택했지만, 환경적인 이유로 또는 노력의 부족과 같은 자신의 이유로 그 결과가 크지 않았다고 해보자. 이 경우, "분명 최선의 선택을 했음에도 다른 원인들로 인해 결과가 좋지 않았네."라고 생각하며 과거의 선택에 대해 확신할 자신이 있는가? 아니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하며 과거의 선택을 의심할까? 즉, 아무리 최선의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선택처럼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최선의 선택이란 택하는 순간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선택을 최선으로 또는 최악으로 만드는건 그 이후의 우리다.

최선의 선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린 충분한 고민을 통해 선택을 내린 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자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을 정하기 위함이며 후자는 그 선택을 진정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실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다면 비록 오라클의 최선을 택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나서 이렇게 확신할 것이다. "그래, 역시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어."

이웅희(AI응용학과) 교수

제17회 사진공모전

찰칵! 당신의 순간을 보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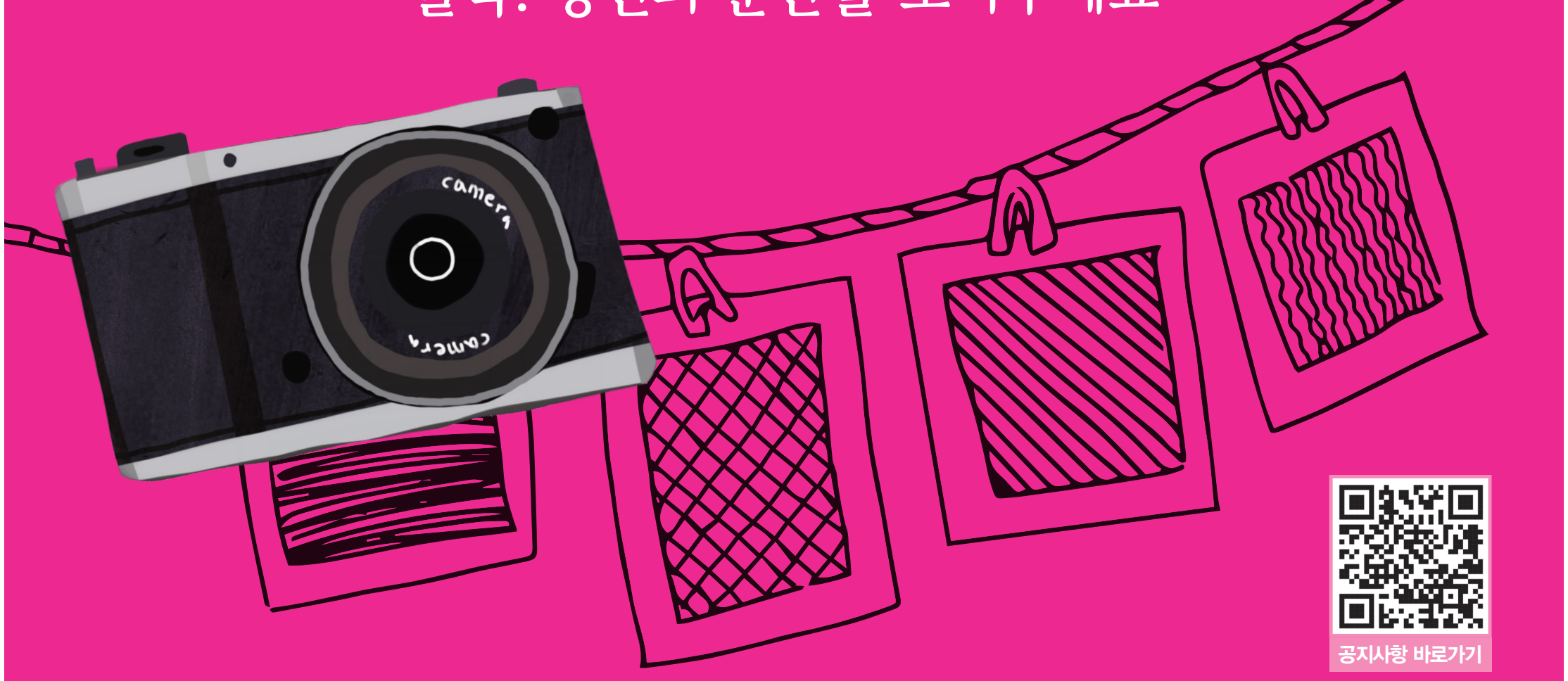

공지사항 바로가기

모집기간
3월 20일(월) ~ 4월 21일(금)

참가대상
본교 전 구성원(학부·대학원 재학생, 교수 및 직원)

주 제
자유(주제에 제약 없음)

제출사항
응모작,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① 온라인 제출 : 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응모작 규격 : 장축 4000px 이상의 jpg 파일
② 오프라인 제출 : 한성대신문사(중문 우촌관 앞 IBK기업은행 건물 2층)에 직접 제출
*응모작 규격 : 8X10in(20.3X25.4cm) 인화 사진

수상작 발표
한성대신문 제590호 (6월 12일 발행)

시상내역
최우수작(1명) : 상장 및 상금 40만 원
가작(1명) : 상장 및 상금 20만 원

비교과 포인트
대회참가 5pt / 최우수작 20pt / 가작 10pt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 인스타그램 @hansungnews
-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 1인당 최대 3점 응모 가능합니다.
※ 참가신청서의 파일 이름은 '(제출자 이름)_제17회 사진공모전 참가신청서'로 합니다.
※ 작품의 파일 이름은 '(제출자 이름)_(작품제목).jpg'로 합니다.
※ 타 사진공모전 출품작의 중복지원을 불허합니다.
※ 스마트폰, 필름사진, DSLR, 미러리스로 촬영한 사진 모두 규격 준수 시 응모 가능합니다.
※ 포토샵 등 합성과정을 거친 사진은 불허합니다. (단, 간단한 색보정은 허용)
※ 제출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이 진행합니다.
※ 최우수작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

한성대신문